

은행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

(피담보채무범위변경, 근저당권결산기변경용)

-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(당사자란, 변경내용 및 계약서 끝부분)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변경계약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.

20 년 월 일

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
주소

채무자
주소

근저당권설정자
주소

위 당사자 사인에 이미 설정한 아래 표시 근저당권의 를(을)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.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피담보 채무의 범위 변경후 피담보 채무의 범위: |
| 근저당권 결산기 변경후 근저당권 결산기: |

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표시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설정계약 | |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|
| 2. 공동저당 의 표시 | 등기 |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 |
| | 물건표시 | |
| | 순위 | |
| | 소유자 | |
| | 등기 |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 |
| | 물건표시 | |
| | 순위 | |
| | 소유자 | |
| | 등기 |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 |
| | 물건표시 | |
| | 순위 | |
| | 소유자 | |

* 근저당권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
(기재예시: 수령함.)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셨습니다가?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|
|---------------|
| 상당자 직위 성명 (인) |
|---------------|